

## 創立 10 周年에 붙여

韓國環境法學會가 創立된지 어언 10 周年이 되었다. “10 年이면 江山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사이처럼 變化의 속도가 빠르고 보면 江山이 변하는데 10 年씩이나 기다릴 것이 없으리만큼 우리의 周邊事情의 변화가 잦아졌으며, 것처럼 빨리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生活環境이 빠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韓國環境法學會가 창립되어 10 年을 지나는 사이에 벌써 두 차례의 憲法改正을 겪었고, 새 憲法 제 35 조 제 2 항에서는 明示的으로 環境‘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環境問題의 심각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10 年전의 創立 이래 韓國環境法學會도 우리 나라의 많은 學會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活動을 계속하여 옴으로써 이제 는 제법 그 基盤이 굳어졌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바, 이는 오로지 會員 모두의 協力과 努力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꾸준히 계속하여 온 環境問題에 관한 學術的 研究와 發表 및 研究成果를 종합한 學會誌 ‘環境法研究’의 발행을 통하여 環境法の 發展과 環境政策의 向上에 크게 寄與한 것은 우리 學會의 業績으로 내세울 만한 일이다. 특히, 여러 어려움 때문에 學會誌의 발간이 순조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創立 이래 每年 꾸준히 ‘環境法研究’誌가 발행되어, 이제 그 제 9 집 을 내기에 이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會誌의 발간을 위하여 특히 애써온 具然昌 및 李相敦 양 教授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10 周年의 고비를 넘어선 韓國環境法學會는 定着期를 거쳐 이제 成長期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研究活動과 그

8 創立 10 周年에 붙여

成果의 발표를 도모함과 동시에 會員 상호간의 돈독한 침목을 다짐으로써 環境法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環境法學會가 10 周年을 거듭 되풀이 하면서 무궁하게 발전되기를 祈願할 뿐이다.

1988 년 4 월

名譽會長

李 尙 圭